

인도의 FTA 확대가 한·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

이 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
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
wlee@kiep.go.kr

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
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
cjcho@kiep.go.kr

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
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
yjchoi@kiep.go.kr

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
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
ycsong@kiep.go.kr

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
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
leejm@kiep.go.kr

- 본고는 인도의 FTA 확대가 한·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춤.
 - 우선 인도의 통상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 체결 FTA를 주요 부문별로 정리하여 비교함.
 -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의 협정문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받은 분야에 대해 분석함.
 -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경쟁력을 비교함.
 - 인도가 체결한 주요 FTA가 한·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.
 - 최근 한국, 일본, 인도의 경제 편더멘털의 변화(인도의 성장부진, 한국 원화의 평가절상 및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 등)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를 고려하여 실증분석 대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.
- 본 연구가 향후 한·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
 - 본 연구가 제시한 한·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위한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은 협정문 분야별 비교를 통한 정성적 접근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론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한·인도 CEP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 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2.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

가.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관련

- 인도는 개방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교역량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상수지 적자, 특히 무역수지 적자의 문제를 야기함.
 - 인도 측 관계자들은 한·인도, 일·인도 경제협력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로 추가적인 개방이나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는데, 이는 경제규모와 노동시장규모에 의해 취약한 인도 제조업의 문제임(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5% 수준임).
 -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를 인위적으로 막으려 한다면, 오히려 인도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음.

나.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

- 모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도의 FTA 정책은 과거 동시다발적 FTA를 통한 양적확장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.
 - 최근 인도 정부는 기체결 FTA의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, 특히 한국, 일본, 아세안 등 최근 체결한 FTA가 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.
 - 최근 모디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불공정하다는 표현을 하는 등 기체결된 FTA가 상대국에게만 유리하고 인도에게는 불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이에 대한 수정의 요구를 할 수 있음.
 - 따라서 인도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 - 2014년 9월 인도 · 아세안 FTA의 서비스 및 투자부문 추가 조약체결은 모디정부의 FTA 질적 향상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음.
- 우리정부도 향후 한 ·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상품부문뿐만이 아닌 서비스와 투자부문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 있음.
- 또한 한 · 인도 CEPA 후에 체결된 일 · 인도 CEPA에서 양허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한 · 인도 CEPA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인도의 FTA 확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.

다. 한 · 인도 CEPA와 일 · 인도 CEPA의 서비스, 투자 및 원산지 비교

1) 서비스

- 한 · 인도 CEPA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게 양허받은 통신 및 국제운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야 할 것임.
- 공급형태(mode)별 서비스 부문을 비교해 보면 한 · 일간의 차이가 주로 mode 3(상업적 주재)에 있음을 알 수 있음.
 - 일본은 주로 투자지분 제한인 반면, 우리나라는 조건부 허용으로 일본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.

- 일본과의 개방 수준 비교와는 별도로 시장진입 자체에 제한이 높은 렌탈 및 리스, 인터넷 서비스,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, 특히 양국의 협력가능성이 높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2) 투자

- 투자부문의 개방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,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불리한 양허조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일본이 부여받은 최혜국대우를 우리나라로 인정받아 우리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
 - 또한 유보부문의 경우 현재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적용한 석유정제 부문 유보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, 미래유보에 포함된 분야에 대해서도 유보 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.

3) 원산지 규정

- 전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.
 -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화학제품(무기, 유기화학), 고무, 플라스틱, 철강, 금속(구리, 알루미늄 등) 품목 등에서 일본보다 다소 불리한 원산지 간주 조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같은 품목에 대해 일본은 세 번 변경 기준만 충족하면 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역내부가가치 포함 비율 조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.

라.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 상품부문 양허내용

1) 상품부문 전체기준

가) 산업별 양허형태

- 상품부문 산업별 양허형태 비교에서 일본에게는 양허됐으나 우리나라에게는 미 양허된 품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 - 향후 한·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인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기 품목들에 대한 양허비중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제안이 필요함.
 - 특히 섬유의류, 전기기계, 운송기계 품목 중 일본에게는 양허를 하였으나 한국에게는 전혀 양허를 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
- 이 3개 부문에 대한 일본의 양허 품목수는 각각 514, 168, 34개이며 이 품목들에 대한 인도의 대한국 양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.

나) 양허개선 품목

- 본 연구는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를 비교분석하여 총 5,664개의 양허수준 제고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였는데,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항목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.
 - (1)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양허를 받았으나 한국의 경우 관세가 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 속하는 품목들.
 - (2) 일본은 양허를 받았으나 한국은 못 받은 품목들.
 - (3) 양국 모두 양허를 받았으나 우리의 양허수준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.
 - (4) 인도가 양국 모두에게 양허하지 않은 품목들 순임.
- 이 우선순위의 선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기 위한 기준에서 도출되었음.
 - 항목 (1)은 한·인도 CEPA의 양허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17년 이후에도 우리의 상품에는 관세가 잔존하나 일본의 상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품목들을 포함함.
 - 항목 (2)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을 나타냄.
 - 항목 (1)이 (2)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RED나 SEN이 양허배제(EXC)에 의해 인도 측의 추가양허를 받을 여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임.
 - 항목 (3)의 경우 현재 우리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나 2017년부터는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들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.
 - 항목 (3)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철폐를 위해서는 올해(2014년) 한·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개최되더라도 인도 측의 동의와 각종절차(예: 국회비준)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.
 - 항목 (4)는 인도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를 꺼리는 품목들에 해당되므로 인도 측의 양허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마.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 상품부문 양허내용

-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 지수를 분석해 본 결과 한·인도 CEPA 발효시점인 2010년에는 수출경합도가 감소하였으나 일·인도 CEPA 이후 다시 증가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수출경합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한·일 간 대인도 시장경합도는 세계시장 경쟁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양국이 인도와 CEPA를 체결, 또는 발효한 시점 이후 수출경합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장기적으로 CEPA 효과가 보다 확대된다면 인도시장 내 양국의 수출 경쟁관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향후 한·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안들을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임.

바.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

1) 전체 교역 시뮬레이션 결과

- 인도가 FTA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인도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인도의 입장에서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인도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함.

- 하지만 총후생(관세수입과 소비자후생의 합) 측면에서 보면 보다 적정수준의 관세율이 요구되는 등의 정교한 분석이 요구됨.

- 한 국가의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혜택에 따라 제3국의 상품이 관세특혜국의 상품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효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.

- 인도가 한국, 일본, EU 모두에게 동일한 관세인하를 부여한 경우 한국의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, 이 결과는 한·인도 CEPA에 따른 제3국 상품에 대한 수출대체효과가 일·인도 CEPA나 EU·인도 FTA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.
- 이 결과는 인도의 FTA 확대에 따라 우리의 대인도 시장 수출경쟁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,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.

2) 품목별 시뮬레이션 결과

- 품목별로 살펴본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(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합)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.

- 이 결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CEPA 체결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,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별 양허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정부는 인도와의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추가자유화를 관찰시켜야 할 것임.

사.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

- 본 연구의 공헌 중 하나는 한·인도 CEPA와 일·인도 CEPA 양허안 비교를 통한 개선우선순위 품목 선정과 이 품목들에 대한 무역효과를 결합한, 즉 정성적·정량적 분석을 결합한 협상 우선품목 선정방법의 예를 제시한 것임.

표 1. 품목별 개선우선순위와 무역효과

HS코드	개선 우선순위	무역효과(2009년 대인도 수출 대비 비중)
271019	3(1순위)	17.0%
721933	3	8.1%
721990	3	11.3%
722550	3	11.8%
841590	3	21.8%
853710	3	10.3%
390390	2(2순위)	7.3%
400270	2	20.4%
540233	2	58.9%
700910	2	17.1%
720838	1(3순위)	35.1%
720839	1	7.7%
720851	1	6.4%
720916	1	47.7%
722511	1	9.6%

주: 1) 개선우선순위 품목들은 본 보고서의 〈표 2-25〉 우선 1순위 20개 품목이다.

2) 무역효과는 SMART에서 관세를 완전철폐(0%)했을 경우의 추정결과이다.

3) 여기에서의 무역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합으로 각 품목별 총 수출증기를 의미한다.

자료: 원 보고서 참고.

그림 1. 품목별 개선우선순위와 무역효과



자료: 〈표 1〉.

- 이 방법론은 앞으로의 한·인도 CEPA 및 여타 FTA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개선품목 선정 시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품목선정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이며 이를 근간으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함.